

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에 관한 규정

제정 2010년 02월 01일

소관부서 : 대학원교학팀

제 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학원 학칙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(이하 “협동과정”이라 한다)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(학위과정) 협동과정에는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을 둔다.

제 3조(학과설치 및 폐지) 협동과정의 학과설치 및 폐지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4조(과정 설치 및 폐지기준) ① 협동과정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

1. 박사학위과정은 2개 이상의 학과 전임교수의 수가 7명 이상, 전임교수 7인 중 4명 이상이 계열별 연구실적을 충족하는 경우
2. 석사학위과정은 2개 이상의 학과 전임교수의 수가 5명 이상일 경우
3. 기타 협동과정의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련법령에 의한다.

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협동과정을 폐지할 수 있다.

1. 재학생 수가 최근 3년간 평균 3명 미만일 경우
2. 2개 학과이상 공동운영이 되지 않을 경우
3. 전임교원 수가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

제 5조(입학 및 정원) 협동과정의 입학, 전형절차 및 정원은 대학원 학칙에 의한다.

제 6조(수업) 협동과정의 수업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에 의한다.

제 7조(학위청구논문 자격시험) 협동과정의 학위청구논문 자격시험은 대학원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.

제 8조(학위수여 및 학위종별) 협동과정의 학위청구논문 작성, 제출, 심사, 및 학위수여와 학위종별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에 의한다.

제 9조(운영위원회 설치) ① 협동과정의 학사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과간 협동과정운영위원회(이하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운영위원회는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교무처장, 대학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,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단, 위원장 및 교무처장, 학과책임교수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.

제10조(운영위원회 기능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학과, 학생정원 및 입학에 관한 사항
2. 협동과정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
3. 관련 규정의 제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4. 기타 협동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11조(대학원위원회 보고)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중요사항은 대학원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제12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제 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